



제422회 국회 (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앙·지역대책본부장의 파견 요청 권한 확대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절차 간소화 등〉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5889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기영

목 차

I . 개요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II . 검토의견	5
1.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의 파견 요청 권한 확대	5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명시 등 안전관리계획 관련 조항 정비 ...	13
3. 해양재난긴급구조 지원체계의 제도적 기반 확립 등	30
4.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관한 예외 절차 신설	35
5. 부정 수령 복구비 반환 절차에 관한 용어 정비	40
6.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기술료의 징수 기준 일원화	41

I. 개 요

1.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출연월일 : 2024. 11. 26.

(3) 회부연월일 : 2024. 11. 27.

2. 제안이유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신속한 건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 확대(안 제15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 신설)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소속 직원을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2)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난 피해자 등에게 지원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의 긴급구조기관의 장 등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개선(안 제22조)

- 1)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2)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중앙안전관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

- 3) 국무총리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집행계획의 수립 절차 개선(안 제23조제1항 및 제3항)

- 1)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던 것을,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만으로 확정하도록 함.
- 2)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는 세부집행계획의 작성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매년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외함.

라.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수정 요청(안 제23조의2)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재난 및 사고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려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안 제53조제3항 신설)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해양 재난 대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도록 함.

바.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신속한 건의 절차 마련(안 제60조제2항 신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함.

II. 검토의견

1.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의 파견 요청 권한 확대(안 제15조제4항 및 제17조 제3항)

개정안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¹⁾의 장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 피해자 및 가족에게 지원되는 정보의 신속한 제공·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의 긴급 구조기관²⁾의 장 및 지원 실시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 신설).

현 행	정부 제출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중앙대책본부장(중앙대책본부</u>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현행	정부 제출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② (생략) <u><신설></u>	<u>가 운영되지 아니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u> <u>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u>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게 지원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긴급구조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소속</u>

현행	정부 제출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지역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u>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긴급구조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u> ④ 제15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 ----- ----- -----.

현행법은 대규모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³⁾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대책본부장에게도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재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대규모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중앙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수습본부장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에 따르도록 규정⁴⁾하고 있음.

이를 통해 중앙대책본부 및 지역대책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도모하려는 것이나, 현행법은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금융, 법률 등 재난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분야의 기관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실제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복구, 임시 숙박시설 및 식사 지원 등 직접적인 구호 활동 외에도 피해자 및 유가족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응급처치, 보험, 법률상담, 통역,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현행 법령 및 정책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은 각 소관 및 기관별로 업무가 분절되어 있어 재난 발생 초기에 피해자들이 각 지원의 종류 및 절차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같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한 피해자 지원체계의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 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 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지역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통합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2024년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법률, 금융 등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사항을 한 곳에서 안내·처리하는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례(2024년)]

재난명(운영기간)	피해 규모	참여기관	주요 실적
서천 특화시장 화재 (1.24.~3.20.)	점포 3개동 227개소 소실	20개 기관 (금융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피해접수 264건, 상담 626건, 재해소상공인 확인 발급 138건
화성 공장 화재 (6.24.~11.5.)	31명 (사망 23, 부상 8)	14개 기관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출입국외국인청 등)	상담 124건, 통역 176건, 의료 310건, 법률 42건, 설명회 9회 등
창원 호우 피해 (9.23.~10.15.)	주택 옹벽 전도	3개 기관 (마산동부경찰서, 마산소방서 등)	임시숙박시설 및 식비 지원 43명, 친인척집 이용 구호비 지원 34명 등
인천 서구 공장 화재 (10.23.~11.8.)	76개동 (45개 업체)	7개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등)	융자 53건, 납세유예 7건, 법률 5건, 국민연금 5건, 기타 3건
안성·용인·이천 대설 피해 (12.3.~12.31.)	(안성) 6,998건/1,122억 (용인) 1,644건/353억 (이천) 2,741건/316억	9개 기관 (농협손해보험, 신용보증재단, 세무서 등)	융자, 측사 재·개축 등 상담 624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2024.12.29.~ 2025.1.19)	181명 (사망 179, 부상 2)	36개 기관 (국토부, 복지부, 문체부, 법률구조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사고수습 지원 164건, 유가족 지원 504건, 법률·보험 지원 563건, 언론 대응 32건

자료: 행정안전부

개정안은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등 일원화된 피해자 지원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 등에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뿐 아니라 지원실시기관에 대해서도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최대한 협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피해 지원실시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생각됨.

추가적으로 개정안은 지역대책본부장에게 관할 구역의 긴급구조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재난 발생 초기에 수색구조상황 및 구조계획 등에 대한 유·가족의 정보제공 수요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소속 직원 파견 요청에 관한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

구 분	중앙대책본부장(행안부장관)	지역대책본부장(지방자치단체장)
현행법	·파견기관: <u>중앙대책본부</u> ·사유: 대규모재난의 효율적 수습 ·대상: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직원	·파견기관: 지역대책본부 ·사유: 재난의 효율적 수습 ·대상: 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행정기관 등) 소속 직원
개정안 (추가)	·파견기관: <u>지역대책본부</u> ·사유: ①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 ② 재난의 효율적 수습 ·대상: ① 재난관리책임기관 ② 지원실시기관	·파견기관: 지역대책본부 ·사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원되는 정보의 신속 제공·안내에 필요 ·대상: ① 긴급구조기관 ② 지원실시기관

다만 개정안이 긴급구조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긴급구조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긴급구조기관이 신속히 최대한의 가용 인력을 동원하여 긴급구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조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재난의 유형 및 규모, 파견요청 시기 등에 관한 어떠한 제한 없이 긴급구조기관 소속 직원의 지역대책본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구조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개정안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관할 지역 소방본부·소방서의 직원 중 일부가 긴급한 구조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따라 지역대책본부로 파견될 경우 신속한 긴급구조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긴급구조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지원실시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규정하기보다는,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여 긴급한 구조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파견요청 시기 등 세부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긴급구조기관 소속 직원 파견 요청과 관련하여 소방청은 재난 대응

초기에 지역대책본부장의 무분별한 소방 직원 파견요청이 있을 경우 긴급구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피해자의 구조상황을 유가족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소방 직원의 파견이 필요하며, 긴박한 상황에서의 구조 활동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파견요청 시기에 관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또는 지침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명시 등 안전관리계획 관련 조항 정비(안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 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개정안은 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및 내용을 명시하고 수립지침 작성·통보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규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보완하며(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② 집행계획 수립 시 국무총리의 승인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공기업 등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없는 기관을 수립 의무 기관에서 제외하며(안 제23조 및 제25조의2), ③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 관련 계획 수립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협의제를 신설하고(안 제23조의2), ④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목적 및 고려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25조).

현행	정부 제출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현행	정부 제출
<u>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u> ③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④ <u>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⑤ <u>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⑥ <u>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u> ⑦ <u>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 제24조의 시·도안</u>	<u>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③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④ <u>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한다.</u> ⑤ <u>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⑥ <u>국무총리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되는 사항을 소관하는</u>

현행	정부 제출
<u>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u> <u>⑧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재난에 관한 대책</u> <u>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u> <u><신 설></u>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변경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u> <u>⑦ 제6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u> <u>⑧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 제24조의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u> <u>제22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u> <u>2. 재난 및 안전관리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u> <u>3.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u>

현행	정부 제출
제23조(집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생략)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	4.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집행계획) ① ----- ----- 제22조제5항----- ----- ----- ----- ----- 거쳐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재난관

현행	정부 제출
<u>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u> <u>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u> <u>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u> <u>·도지사</u>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 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공기 관이나 공공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부 등 지방조직에 통 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 과의 연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 는 때에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과 연 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u>리책임기관(「지방공기업법」 제3</u> <u>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u> <u>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u> <u>같다)</u>----- -----. ----- ----- ----- -----. 제23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 과의 연계) ① ----- ----- ----- ----- ----- -----. 이 경우 재 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재난 및 사 고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 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경 우에는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 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후단 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 관계 중앙

현행	정부 제출
제24조(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u><신 설></u>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시·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	<u>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려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에 대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제24조(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관할 구역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 ----- -----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제2항-----

현행	정부 제출
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신 설> ① 시·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 제3항----- ----- ----- ----- -----. ⑤ ----- 제4항----- ----- ----- 제3항----- ----- -----. 제25조(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및 사고로부터 관할 구역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군·구안전관리계획----- ----- ----- ----- -----

현행	정부 제출
한다.	-----.
②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u>시장·군수·구청장</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 -----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 제2항- ----- 제3 항----- -----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 제4항- ----- ----- -- 제3항----- -----.
제25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① (생략)	제25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도 또는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외	②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 ----- ----- -----

현행	정부 제출
한다)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세부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군·구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 ----- ----- ----- ----- ----- -----. ③ ----- ----- ----- 제25조제4항----- ----- ----- ----- ----- -----. ④ ----- 제25조제4항----- ----- ----- ----- -----. ⑤ ----- ----- ----- 제24조제4항----- -----

현행	정부 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⑥ 시·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도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제24조제4항----- ----- ----- ----- -----.
⑦·⑧ (생략)	⑦·⑧ (현행과 같음)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내용 등 보완(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현행법은 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수립 목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재난 및 안전에 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만 규정하고 있으며, ② 국무총리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관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면 국무총리가 이를 종합하여 중앙위원회⁵⁾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④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도 그 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개정안은 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목적을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현황 및 여건 변화, 법령·제도의 마련 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며, ②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통보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무총리가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종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역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④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변경 사유를 국무총리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2의2. 제10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의2.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4.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5.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6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 된다.

재난·안전 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및 내용 등을 명확히 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난·안전 분야의 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구분	현행법	개정안
목적	-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내용	·재난에 관한 대책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재난 및 안전관리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 ·법령·제도의 마련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확립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기반 조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립지침	국무총리가 작성·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통보
수립절차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무총리에게 제출 ②국무총리가 심의를 거쳐 확정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②행정안전부 장관이 종합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 ③국무총리가 심의를 거쳐 확정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변경사유	-	·국무총리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

다만,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소관 기관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재난·안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⁶⁾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있는바, 재난·안전 관련 정책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현행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집행계획의 수립 절차 간소화 등(안 제23조)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는 조정위원회⁷⁾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하며,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⁸⁾에게 집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①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9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제6호, 제6호의2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
2.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3. 제26조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제71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5.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행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개정안은 집행계획 수립 시 국무총리의 승인 규정을 삭제하여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집행계획 수립과 관련한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대상 기관에서 지방공기업⁹⁾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없는 기관을 제외함으로써 세부집행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생각되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구분	현행법	개정안
수립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작성 → 조정위원회 심의 → 국무총리 승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작성 → 조정위원회 심의(<u>국무총리 승인 삭제</u>)
세부 집행 계획	·작성주체: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작성주체: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 지방공기업 등 <u>소관 중앙행정 기관이 없는 기관은 제외</u> (신설)

9) 「지방공기업법」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3) 개별법상 재난 및 안전 분야 계획 사전협의제 신설(안 제23조의 2)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재난관리주관기관¹⁰⁾으로서 재난 및 사고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 등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사전협의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별법에 따라 수립·변경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계획이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국가 전반의 재난 및 안전 관련 계획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생각됨.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구분	현행법	개정안
개별법령 에 따른 계획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수립 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 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할 의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수립 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 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할 의무 (신설) ·계획 수립 시 계획의 <u>확정 전에</u> <u>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의무</u>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u>수정</u> 요청 가능

(4)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고려사항 명시
(안 제24조 및 제25조)

현행법은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계획의 수립 목적 및 고려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을 재난 및 사고로부터 관할 구역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시·군·구의 경우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지역의 안전관리계획을 보다 내실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구분	현행법	개정안
목적	-	·재난 및 사고로부터 관할 구역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고려사항	-	·국가안전관리계획(시·도의 경우) 또는 시·도안전관리계획(시·군·구의 경우)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

3. 해양재난 긴급구조 지원체계의 제도적 기반 확립 등(안 제52조, 제53조 및 제55조)

개정안은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과 관련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및 긴급구조 교육 담당기관 지정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부여(안 제 53조 및 제55조)하는 한편, 해양재난 긴급구조 지휘권자에 관한 인용 조문을 실질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2조).

현행	정부 제출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① ~ ⑩ (생략) ⑪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중앙구조본부의 장으로 각각 본다.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 ----- ----- ----- ----- 「수상에서 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
제53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①·② (생략) <신설>	제53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현행	정부 제출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장) ① ~ ③ (생략) ④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⑥ (생략)	<u>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재난상황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종합평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u>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u> ----- -----. ⑤·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함)을 소방청에,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함)을 각 지역의 소방본부에 두면서 중앙통제단의 단장을 소방청장, 지역통제단의 단장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규정¹¹⁾하고 있으며, 중앙통제단장과 지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①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역통제단장에게 재난상황이 끝난 후 긴급구조지원기관¹²⁾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¹³⁾를 하도록 하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긴급구조업무 및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긴급구조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¹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긴급구조기관으로 규정¹⁵⁾하고 있는데, 해양재난의 상황이 종료한 후 긴급구조지원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으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③ 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통제단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①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시·도의 소방본부에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군·구의 소방서에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② 시·도긴급구조통제단과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되,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

③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통제단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① 중앙통제단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상황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결과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③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의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로 한정되어 있어 육상에서의 재난과는 다르게 긴급구조활동 주체와 긴급구조지원활동에 대한 평가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또한, 해양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의 지정 권한 역시 소방청장과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해양재난에 관한 전문성 있는 기관의 선정 가능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과 관련하여서는 해양경찰청장에게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및 긴급구조 교육기관 지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해양재난 긴급구조 지원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해양재난대비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생각됨.

추가로 개정안은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지휘권자와 관련하여 인용조문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에서 중앙구조본부·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조(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에 맞는 인용조문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참고: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관한 현행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1.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및 기상청
2.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3. 대한적십자사
4. 종합병원
- 4의2. 응급의료기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구급차 등의 운전자
5. 전국재해구호협회
6.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7.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 지방국토관리청, 3. 지방항공청, 4. 보건소,
5.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6. 한국가스공사 7. 한국가스안전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전기안전공사, 10. 한국전력공사, 11. 대한석탄공사,
12. 한국광물자원공사, 13. 한국수자원공사, 14. 한국도로공사, 15. 한국공항공사, 16. 항만공사, 17. 한국원자력의학원, 18. 국립공원관리공단, 19.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20. 지방해양수산청, 21. 어업관리단,
22. 해양환경공단

4.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관한 예외 절차 신설(안 제60조 등)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신설).

현 행	정부 제출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회재난 중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이 조에서 “특별재난지역 피해”라 한다)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58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① ----- ----- <u>제60조제4항</u> ----- ----- ----- -----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생략) <u><신 설></u>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u>

현행	정부 제출
	<u>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u>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 ----- ----- -----.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 ----- ----- ----- ----- ----- -----

현행	정부 제출
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 ⑦ (생략)	----- -----. ----- ----- ----- -----. 1. (현행과 같음) 2. ----- 제60조제4항-----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제60조제4항----- ----- -----. ⑤ ~ ⑦ (현행과 같음)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는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경감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현행법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중앙대책본부장¹⁶⁾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¹⁷⁾하고 있음.

개정안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긴급한 상황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국비를 교부함으로써 피해지역의 조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안번호 2202222호)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데, 두 개정안은 건의 주체 및 심의 배제 사유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중앙위원회 심의 배제 건의 주체와 관련하여 한병도의원안은 심의를 주관하는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제출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건의 주체인 ‘중앙대책본부장’이 심의 절차 배제도 건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의 배제 사유에 대하여도 한병도의원안은 ‘재난상황이 긴급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제출안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선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다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간소화에 관한 개정안 비교]

구분	한병도의원안	정부제출안
건의 주체	중앙위원회 위원장	중앙대책본부장
심의 배제 사유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u>재난상황이 긴급</u> 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u>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u> 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부정 수령 복구비 반환 절차에 관한 용어 정비(안 제66조의3)

개정안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복구비등을 지원받은 자가 이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반환절차에 관하여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것을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제3항).

현행	정부 제출
제66조의3(복구비등의 반환) ①·② (생략)	제66조의3(복구비등의 반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u>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u>	③ ----- ----- ----- <u>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u>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2021년 1월 1일 시행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기존에 사용되던 ‘체납처분’이라는 용어가 본질적인 강제성을 나타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되었고, 2020년 3월 24일 시행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용어를 실질에 맞게 변경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따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6.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기술료의 징수 기준 일원화(안 제73조 조 및 제78조)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통한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기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도록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73조 및 제78조)

현행	정부 제출
제73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그 수익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술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기술료의 징수대상, 징수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037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②	제73조(기술료 등의 사용)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률 제2037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②

현행	정부 제출
(생략)	(현행과 같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등의 업무의 일부,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73조에 따른 <u>기술료의 징수·사용</u> ,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 ----- ----- <u>기술료 등의 사용</u>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기술료를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수익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료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1월 1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어 모든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기술료의 정의 및 징수주체 등에 관하여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기술료를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수익이 아닌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실시를 허락하면서

받는 대가'로 정의¹⁸⁾하고, 기술료의 징수도 중앙행정기관 직접 하는 것이 아닌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성가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규정¹⁹⁾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비교]

구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현행	개정안
정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실시 권리 이전 후 징수한 금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사업화 수익 중 일부 금액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규정을 인용
징수주체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행정안전부	
정부 납부액 범위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사업화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사업화 수익 중 일부 금액	

이에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개발성과 기술료 징수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정 취지 및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성과

1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가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와의 통일성 있는 기준 적용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입법조
치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349